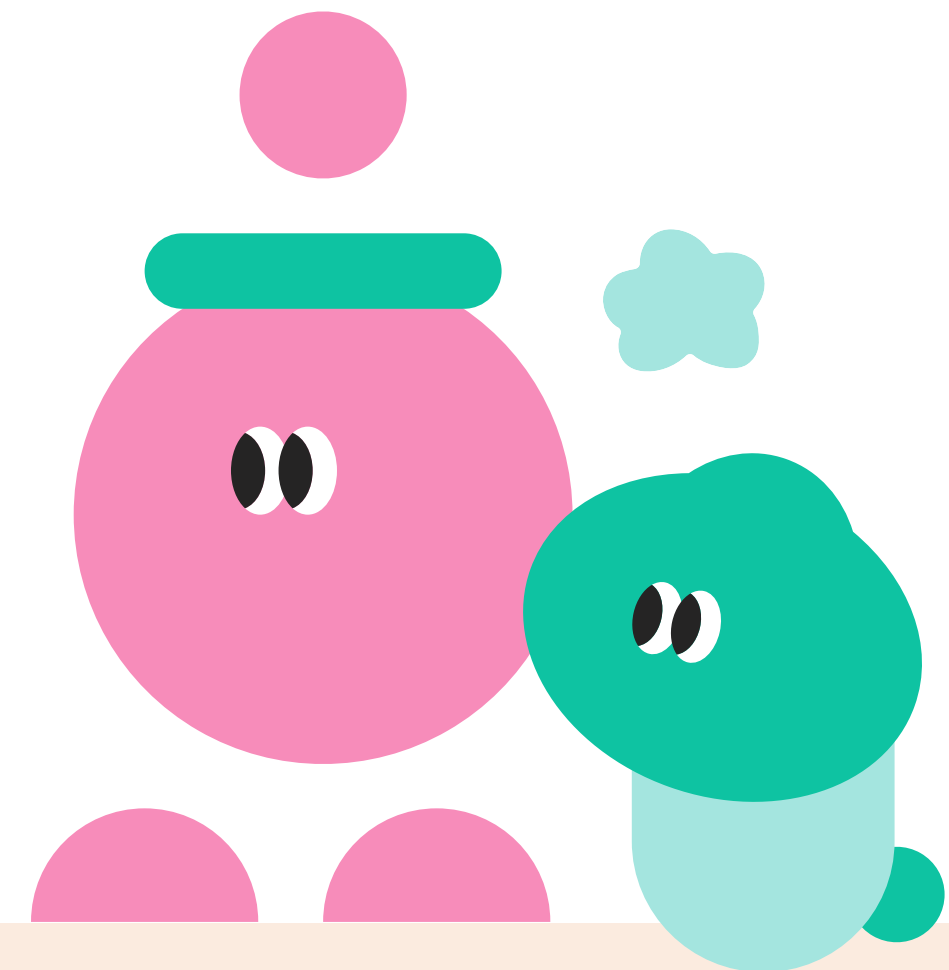


프랜차이즈 본사 재직자를 위한 무료교육

#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안내



#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은?

중소기업 재직자의 직업훈련 참여를 돕고, 프랜차이즈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관련 중소기업과 협약을 체결하여 체계적인 인력양성과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는 고용노동부, 한국산업인력공단 주관의 정부지원 교육사업입니다.

- ✓ 교육을 희망하는 기업은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규정 제4조에 의거하며 협약체결이 필요하며, 이는 협회 회원 가입과는 별개이고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.
- ✓ 협약체결 후 1년 동안 수강이력이 없으면 협약은 자동해지되고, 추후 교육 희망 시 협약을 다시 제출해주세요.



# 협약체결은 어떻게 하나요?

- 1 홈페이지(www.edukfa.or.kr)에서 협약서류 다운로드  
 | → 협약서류 작성 → 제출(홈페이지 업로드)

## 협약체결 방법

edukfa.or.kr 협약서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→ 협약기업 날인 후 원본 우편 발송 또는 방문 제출

협약서 다운

오시는길

협약기업신청 (협약서등록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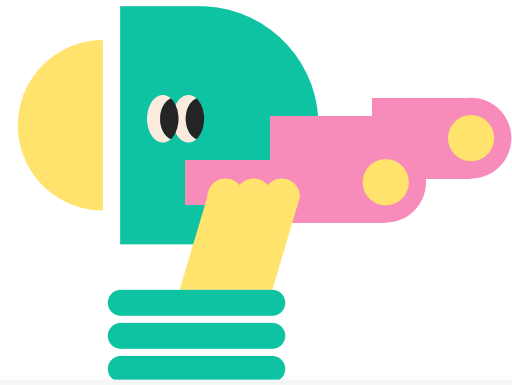
- 2 서류작성 요령

정확한 기업명, 사업자등록번호 기재!

같은 회사에 2개 이상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경우, 수강학생이 소속된 회사명, 사업자등록번호로 협약 체결!

협약체결 후 1년 동안 수강이력 없을 시 협약 자동해지, 추후 교육 희망 시 협약서 제출

법인 도장 날인(서명X)



# 누가 교육을 들을 수 있나요?

1

## 우선지원대상기업 (중소기업) 재직자

- 상대적으로 인프라 및 기회가 부족한 중소기업 재직자를 위한 교육입니다.

2

## 협약체결기업 재직자

- 우리회사가 협약 체결이 되어있는지 확인해주세요(홈페이지 검색 가능)

3

## 고용보험 가입자

-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고용보험 가입자만 수강 가능해요

# 수강신청은 어떻게 하나요?

## 1. 교육원 회원가입

교육원 홈페이지([www.edukfa.or.kr](http://www.edukfa.or.kr)) 에 개인회원가입 및 로그인

## 2. 교육 신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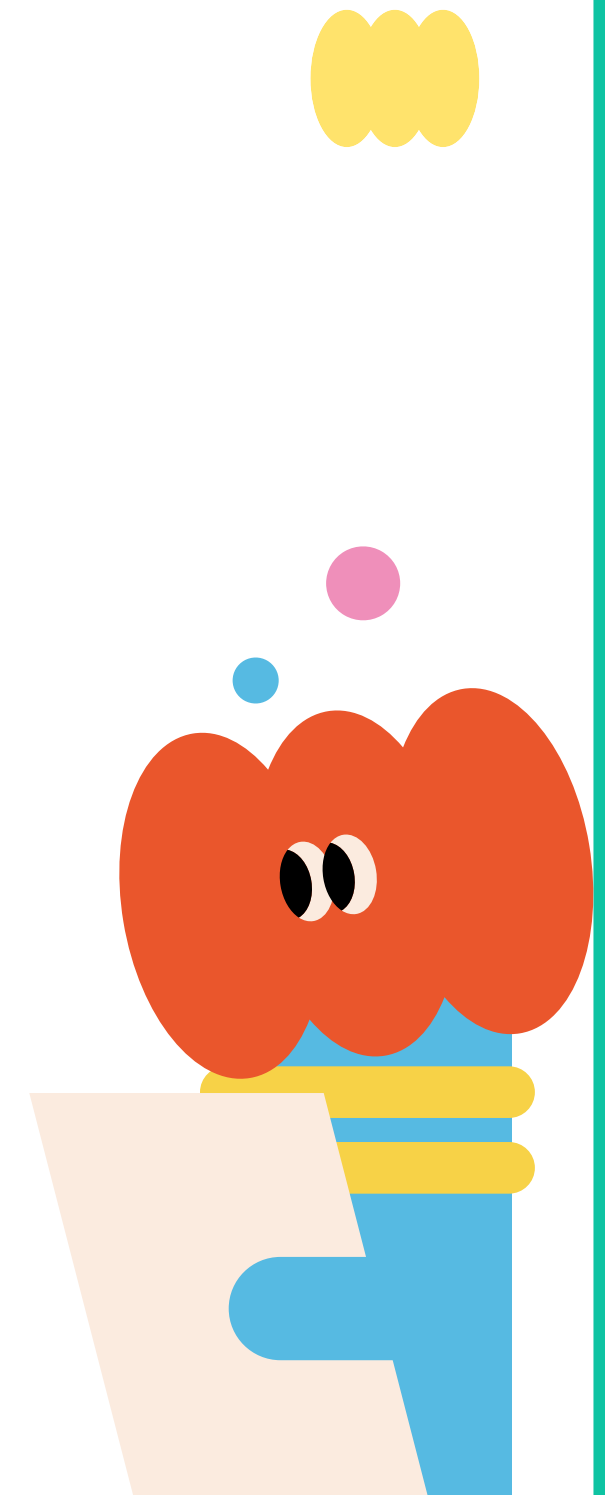
원하는 교육 확인 후 교육수강 신청하기를 눌러주세요!

1/ 협약기업 여부, 2/ HRD 홈페이지 가입여부, 3/ HRD 앱 다운로드 여부 체크 (모두 '예' 여야 신청됩니다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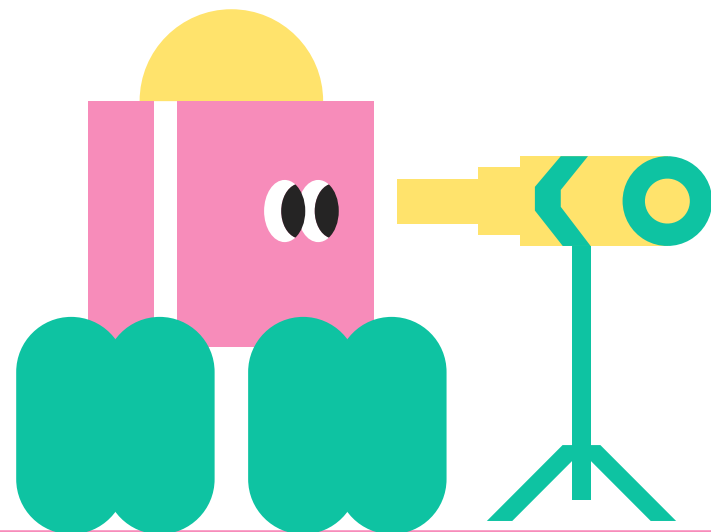
사업장정보, 교육생정보 입력(실제 수강하는 교육생의 이름, 주민등록번호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신청됩니다)

## 3. 정보입력

사업장정보, 교육생정보 입력(실제 수강하는 교육생의 이름, 주민등록번호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신청됩니다)



# 신청 후 절차 안내



## 1 마이페이지 확인

홈페이지 로그인 후, 마이페이지에서 상태를 확인하세요



## 2 접수완료

정원 20명 내 선착순 접수 완료된 상태입니다.

교육 일주일 전 참석여부 확인 전화를 꼭 받아주세요!



## 3 접수대기

정원 20명 이후 접수할 경우 '대기'상태이며, 교육 일주일 전 교육 취소가 발생하면 대기 순서대로 연락드려 접수를 도와드립니다.



## 4 이메일, 문자, 전화 꼭 확인하기

교육 참석 여부 확인 전화를 꼭 받아주세요. 확인되지 않으면 접수취소됩니다.

교육 확정 후 안내사항은 이메일, 문자로 보내드리니 반드시 확인해주세요!

**<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협약서 >**  
**(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운영규칙 제16조 관련)**

**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협약서**

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(이하, “공동훈련센터”라 한다)와 (이하, “협약기업”이라 한다)는 「고용보험법」 시행령 제5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「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사업」(이하 “컨소시엄 사업”이라 한다)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.

**제1조(목적)** 본 협약은 컨소시엄 사업에 관한 공동훈련센터와 협약기업간의 역할과 책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기관의 역할)** ① 공동훈련센터는 관련 법령 및 「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운영규정」(이하 “규정”이라 한다) 및 「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운영규칙」(이하 “규칙”이라 한다)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 한다.

1. 협약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직무분석, 재직근로자의 교육훈련 수요조사, 교육훈련과정 개발 및 운영 등 직업능력개발 지원
2. 협약기업 원활한 인력공급을 위한 채용예정자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과정 개발·운영 등 지원
3. 그 밖에 협약기업의 체계적인 인적자원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② 협약기업은 공동훈련센터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하다고 요청한 사항에 적극 협조하며, 컨소시엄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재직근로자의 교육훈련 참여에 적극 노력한다.

**제3조(훈련비용에 관한 약정)** ① (사업주훈련 환급방식) 협약기업은 공동훈련센터가 컨소시엄 사업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훈련비용은 「고용보험법」 제27조 및 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」 제20조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금으로 충당한다. 이 경우 협약기업은 공동훈련센터가 「고용보험법」 제27조 및 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」 제20조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훈련비용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접 지원받는 것에 동의한다.

② (선지급 방식) 공동훈련센터는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지원받는 지원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.

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약정은 협약기업이 명시적인 해지에 관한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본 협약서의 효력이 유효한 기간까지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. 다만, 회계연도 중에 본 협약서의 효력이 상실하더라도 제2항에 따른 약정은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.

④ 공동훈련센터는 컨소시엄 사업으로 실시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면서 규정 제1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협약기업 또는 근로자에게 훈련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.

1. 공단으로부터 지원받는 지원금만으로는 교육훈련실시가 어려운 경우
2. 훈련생의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고 교육훈련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훈련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키는 경우
3.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경우

**제4조(성실의무)** 공동훈련센터와 협약기업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초하여 컨소시엄 사업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

**제5조(협약기간)**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컨소시엄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까지로 한다. 다만, 컨소시엄 사업 종료이전에도 협약기업이 1년간 연속하여 컨소시엄 사업으로 실시되는 교육훈련에 근로자를 참여시키지 않은 경우는 협약이 해지된 것으로 본다.

이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2부 작성, 기명날인하여 양 기관이 각 1부씩 보관한다. (협약서 복사본 또는 스캔하여 전자문서(스캔본 파일)로 보관 가능)

20    년    월    일

**(공동훈련센터)**

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

주 소 :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27 aT센터 603호

대표자 : 정 현 식

**(참여기관)**

주 소 :

대표자 :

(인)

**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귀하**

※ 첨부서류 : [첨부1]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협약기업 일반 현황 1부

【 첨부 1 】

<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협약기업 일반 현황 >

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협약기업 일반 현황					
회사명				대표자명	
주소(본사)	우편번호(      -      )				
업 태		업 종		상시근로자수	
담당자	성 명			HRD부서명	
	전화번호	사무실: 휴대폰:		FAX	
	전자우편 주소			홈페이지 주소	
고용보험관리번호				사업자등록번호	
<p>【 기타 사항 】</p>					